

審 查 報 告 書

2001. 3. 28
總務委員會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2001. 3. 20
- 나. 提出者 : 瑞山市長
- 다. 回附日字 : 2001. 3. 21
- 라. 上程日字 : 2001. 3. 28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自治行政課長 崔鎮珏)

가. 改正理由

- 인지면 관할 둔당1리에 아진아파트 445세대가 건립되면서 총 세대수가 520세대에 달하며, 부춘동 관할 읍내44통에 현대아파트 915세대가 건립되면서 총 세대수가 1,203세대에 달하며, 통·리장 1인 관리하기에 업무의 양이 과중하고 대부분 외지에서 유입된 아파트주민과 기존의 마을주민간 유대와 화합이 미흡하며
- 석남동 관할 석남1통이 대로2-1호 도시계획도로를 경계로 도시 지역과 농촌지역으로 양분되어 지역정서 및 생활양식이 서로 다름에 따라 행정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와 같이 통·리장의 과중한 업무와 주민간의 유대 및 화합이 미흡함에 따라 각종 시책의 말단침투와 대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

- 3개 면·동의 취락형태를 고려 통·반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추진 및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고 코자함.
(현행 78통 257리 1,441반 ⇒ 조정 81통 258리 1,478반)

나. 主要骨子

- 동지역 부춘동란의 읍내44통을 분통하여 읍내45통과 읍내46통을 각각 신설 조정하고, 석남동란의 석남1통을 분통하여 석남4통을 신설 조정함[안 별표1]
- 읍·면지역 인지면란의 둔당1리를 분리하여 둔당3리를 신설 조정함[안 별표2]

3. 專門委員 檢討意見

-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는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의거 제정된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 인지면 둔당1리(행정리)에 소재한 아진아파트가 준공되어 445세대가 입주되면서 총 세대수가 520세대에 달하여, 입주민과 지역적·정서적 이질감으로 인해 주민융화가 어렵고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과대 리로 리장1명으로서는 리행정수행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고 해당아파트 개발위원회의 분리 건의가 있는등 원활한 리행정 수행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분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리장 정수를 증원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부춘동 관할 읍내44통 지역내에 현대아파트 신축으로 915세대가 건립되면서 총 1,203세대수에 달하며 인구가 급격히 증가중에 있어 현 통장1명으로는 업무가 과중되어 통행정의 효율적 수행이 어렵고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2개통을 분통하려는 것이며
- 석남동 관할 석남1통은 지역여건상 도시계획도로(대로2-1)를 경계로 농촌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음으로 그동안 지역간의 보이지 않는 이질감등 마을의 화합과 통행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연부락 및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분리하는 것으로
- 금번 제출된 의안중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맞게 본 조례 “별표1”의 서산시 행정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정수중 부춘동 관할구역을 45,46통을 석남동 관할구역중 4통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제 198 호
의결(보고) 년 월 일	2001. . . (제 회)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1. 3. 20.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98 호
------	---------

제출년월일 : 2001. 3. 20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개정이유

- 인지면 관할 둔당1리에 아진아파트 445세대가 건립되면서 총 세대수가 520세대에 달하며, 부춘동 관할 읍내44통에 현대아파트 915세대가 건립되면서 총 세대수가 1,203세대에 달하여, 통·리장 1인이 관리하기에 업무의 양이 과중하고 대부분 외지에서 유입된 아파트주민과 기존의 마을주민간 유대와 화합이 미흡하며
- 석남동 관할 석남1통이 대로 2-1호 도시계획도로를 경계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양분되어 지역정서 및 생활양식이 서로 다름에 따라 행정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와 같이 통·리장의 과중한 업무와 주민간의 유대 및 화합이 미흡함에 따라 각종시책의 말단침투와 대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
- 3개 면·동의 취락형태를 고려 통·반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추진 및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고코자 함
(현행 78통 257리 1,441반 ⇒ 조정 81통 258리 1,478반)

□ 주요골자

- 동지역 부춘동란의 읍내44통을 분통하여 읍내45통과 읍내46통을 각각 신설 조정하고, 석남동란의 석남1통을 분통하여 석남4통을 신설 조정함 [안 별표1].
- 읍·면지역 인지면란의 둔당1리를 분리하여 둔당3리를 신설 조정함 [안 별표2]

□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나.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01. 2. 1. ~ 2. 20.
-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예산조치 : 통·리장 수당 및 반장활동비 2001년 추경에 반영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부춘동의 관할구역란 중 “읍내동(11, 12, 21, 22, 31, 32, 33, 34, 35, 36, 41, 42, 43, 44통)” 을 “읍내동(11, 12, 21, 22, 31, 32, 33, 34, 35, 36, 41, 42, 43, 44, 45, 46통)” 으로 하고, 석남동의 관할구역란중 “석남동(1, 2, 3통)” 을 “석남동(1, 2, 3, 4통)” 으로 한다.

별표 2의 인지면 법정리란 중 “둔당리” 에 이장정수 “1” 명을 추가하고, “둔당3리” 를 신설하며, 둔당3리의 관할구역은 “아진아파트 일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

현		개		선	
행정동명	동장정수	관할구역	행정동명	동장정수	관할구역
부춘동	1	읍내동(11, 12, 21, 22, 31, 32, 33, 34, 35, 36, 41, 42, 43, 44통)	----	--	읍내동(11, 12, 21, 22, 31, 32, 33, 34, 35, 36, 41, 42, 43, 44, 45, 46통)
		갈산동(1, 2, 3통)			-----
		석남동(1, 2, 3통)			석남동(1, 2, 3, 4통)
석남동	1	양대동(1, 2, 3, 4통)	----	--	-----
		죽성동(1, 2, 3통)			-----
		예천동(1, 2, 3통)			-----
		오남동(1, 2, 3, 4통) 장 동(1, 2통) 덕지천동			----- ----- -----

[별표 2]

현					선				
읍·면명	행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관할구역(자연마을명)	읍·면명	행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관할구역(자연마을명)
인지면	둔당리	1	둔당1~2리	(생략)	-----	-----	--	둔당1~2리	(현행과 같음)
		(신설)					1	둔당3리	아진아파트 일원